

스쿨미투 2차 피해 중단을 위한 집담회

황지영(젠더정의행동GOMA)

왜, 다시 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발제자는 오늘 집담회의 주요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에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사건 발생 이후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사건의 내용을 접하게 되었다. 이 사안에 대해 언론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인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양산하였는데, 작은 지역사회에 위치한, 전교생도 많지 않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상담 이후 신고된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의 죽음’으로 ‘거짓말을 한 학생들’을 문제라고 지목하기 시작했다. 여성과 아동·청소년, 장애 여성 등 다양한 대상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지원한 경험을 가진 발제자의 입장에서는(상식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도) 언론의 보도 방식과 지역사회의 공격적인 피해자 비난 방식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2017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2018년 미투 시기를 지나 어느새 7년이 지나가고 있다. 이제는 기억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것 같은 2024년 8월. 포털 기사에 사건을 연상시키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선생님이 허벅지 만져” 여중생들 짜고 거짓말.. 교사의 억울한 죽음(머니투데이. 2024.8.5.) 예전처럼 많은 언론이 받아쓴 기사는 아니었지만 기사에 대한 ‘충격’은 한동안 이어졌다. 자극적인 기사 제목, 지역과 학교명을 그대로 기록하고, 영정사진을 맨 위에 배치하고,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소환하는 반인권적 방식은 7년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단 1건의 기사라 하더라도 반인권적 보도가 지속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건의 당사자였을 학생들은 성인이 되었을 것이고, 학교에는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남아있지도 않을 것인데 다시 소환되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은 어찌할 것인가?1)

그래서 다시,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스쿨미투에서 2차 피해가 왜 중단되어야 하는지.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보도에서 ‘성인지감수성’이 왜 필요한지.

왜, 2차 피해인가?

1)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교사의 죽음과 그 가족의 슬픔에 대해서는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 발제는 ‘피해자 중심의 관점’을 원칙으로 사건의 보도 등의 과정에서 2차 피해 발생의 문제를 살피고, 이후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다양하다. 피해를 받았던 사실은 사회적 반응에 따라 직접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 등과 같은 주변에까지 간접피해가 발생시키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끼친다.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책망 또는 양비론적 비난 등은 피해자에게는 1차 피해 못지 않은 상처를 준다. 범죄사건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형사사법기관의 권위적인 태도와 불친절함이 수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비난과 불신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처를 가하는 요인이 된다. 피해 사건 또는 피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피해자가 사회적 또는 정신적으로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는 과정을 ‘2차 피해’라고 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만 주변 사람들로 인해 고소하지 못하게 되거나 가해자나 주변에서 비난당하는 등의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받지 못하거나 침묵을 강요당하게 되는 경우도 극단적인 심리적 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차 피해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정신적·신체적 후유증 외에도 통념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2차 피해는 1차 피해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고,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태도로 인해 피해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법령에 규정된 2차 피해는 다음과 같다.

<p>『여성폭력방지기본법(2019.12.25. 시행)』</p> <p>제3조(정의)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p> <p>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u>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u></p> <p>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p> <p>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14조(피해자의 권리)

- 2.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 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전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내성희롱발생시조치)의 제6항의 불리한 처우(=2차 피해) 금지 조항 참고

오마이뉴스의 ‘학생들과 신체접촉 신빙성 높아.. 자살 교사 유족 손배 기각(2021.5.6.)’ 기사(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1614)를 토대로 살펴보면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피해 학생들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서는 2차례 제출되었다.
 2. 경찰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3차 진술서는 장난을 친 것이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고, 전북교육청에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 손목을 잡아당기고 손을 잡았다 → 반지사이즈를 재달라고 부탁해서 손가락을 감아 길이를 재준 것
 - 허벅지를 주물렀다 → 수업 중 다리를 떠니 복 떨어진다며 무릎을 툭 친 것
 - (교사의 주장) 학생들과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탄짓하는 아이에게 집중하라고 어깨를 가볍게 친 것 등
- ⇒ 사건이 신고된 이후 피해자(신고자)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을 위축시키고, 위협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게 하기 때문에 2차 피해에 해당한다. 신고 이후 행위자 등이 신고인들을 찾아오는 상황은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2차 피해 발생을 방치한 것으로 보여진다.
3. 학생들은 ‘초기 진술서가 진실이고, 탄원서는 써달라고 부탁해서 썼다’, ‘기자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기사를 쓰고...’, ‘아이들이 받은 부당함에 자신이 당한 일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자신들이 선생님을 죽인 것처럼 표현해서... 괴롭다’ 등의 내용이 상담기록에 남아 있다.

2017년 당시 언론 기사의 제목에서는 ‘자살’ ‘부풀린 진술’ ‘비극’ ‘거짓말’ 등의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유는 형사사건에서는 내사종결되었고, 학생들은 진술을 반복했고,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탄원서를 교육청에 제출했고, 교사에게 혼났던 학생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기사 중에는 지역명과 학교를 알 수 있는 정보(중학교), 신고된 피해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어서 피해자와 관련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2014년 성폭력사건보도수첩(여성가족부,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에서는 ‘피해자 보호 우선하기’ ‘선정적, 자극적 지양하기’ ‘신중하게 보도하기’ 등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해자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마치 확정된 진실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에서 얻은 정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하는게 필요한지 적절한 판단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신고인)은 수사와 사건 처리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여진다.(오마이뉴스 기사의 학생 상담일지에도 매우 괴롭다는 기록이 있음) 따라서 언론의 보도와 지역사회가 이를 방치한 행위는 2차 피해에 해당한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기자협회, 여성가족부가 보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3조제6항에서는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요해서는 안되며 저속하게 다루어도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언론의 2차 피해가 지적될 때마다 언급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2년 12월 12일에 제정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에서는 언론이 범죄 사건을 보도하는 이유로 범죄 예방과 예방을 위한 사회정책적인 대책 마련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꼽는다. 범죄 사건 보도의 특성상 특정인의 인격권 등의 헌법상 기본권에 위반되는 보도로 다양한 인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는데 그 중에서도 성폭력(성희롱) 범죄 보도는 사건 특성상 피해자와 그 가족이 2차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이 다루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폭력 사건 보도를 개선하려는 시도들이 있고, 관련 보도 준칙들도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이드라인에 머물고 있다 보니 언론사와 기자 본인의 의지에 기대는 부분이 많아서 여전히 가이드라인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2차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언론은 사과하지 않는다.²⁾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사건은 피해자가 아동복지법상 아동(18세 미만)에 해

2) 예외적으로 2022년 인하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언론기사의 선정적 보도와 관련하여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는 「반성하며 다시 쓴, ‘인하대 성폭력·사망 사건’기사에서 그동안 나왔던 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반성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2720405895578>) 발제자가 봤던 2024년 8월 5일 기사는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였다.

당하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성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성희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말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2항은 직무 수행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 처벌법 제2조(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형법 제305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등이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상담을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한 교사(학교)는 아동복지법상 경찰서와 교육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지침과 매뉴얼(법령)에 따라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된 것은 ‘행위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맞게 처벌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학생들의 진술이 있지만 행위자로 지목된 교사가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만한 증거가 있지 않은 경우나 학생들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종결될 수도 있다.(전북일보 2018.8.11. 성희롱의혹에 목숨끊은 교사 누명 풀어달라) 이 과정에서 행위자로 지목된 교사와 가족은 학생들에게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했고,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번복으로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직위해제)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자...) 직위해제가 가능하지만 직위해제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³⁾. 성희롱은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기관 내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이 가능한 사안이다⁴⁾. 또한 성희롱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인권침해’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이 교사의 출근을 정지시키고(피해

3)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형사사건 기소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전절차를 거침이 없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의 해제’로서 사유에 따라 능력 회복 및 재판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 다름.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속함(징계업무편람. 인사혁신처. 2022)

4) [징계사유와 형사벌의 관계] 형사사건으로 조사나 기소중인 사실에 관해서도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비위 사건에 관하여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계류중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귀추를 기다릴 것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을 물론, 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대법원 1982.9.14. 선고82누46판결)

[무죄 등의 확정판결과 징계가능 여부] 벌금 이하의 형을 받거나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동 비위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한 따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음(대법원 1967.2.7. 선고 66누168판결)

자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 시행), 직위해제 처분(수사 등 해당사유), 성희롱 등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교육공무원 징계령 등)하기 위해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의 조사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2017년 사건 초기 기사는 내사종결된 사건에 대한 교육청에서의 조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것처럼 유족의 주장을 중심으로 서술함으로써 교사의 행위가 의도되지 않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 보여지게 하고 있다. 물론 그럴수도 있겠지만 ‘성희롱’은 권력관계를 전제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계를 침범하여 동의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의도는 성희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피해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 행위가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았을 때, 학교내에서 발생한 스쿨미투에서 피해자들은 교사의 일방적인 신체접촉 등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에 대해 고발하고 있다. 유족도 학생들과 교사사이에 신체접촉은 있었다지만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입건이 안되었고, 인권센터에서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룬다고 들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8.9.12. 선고 2018누42469판결』

- 성희롱의 성립에는 상대방이 행위자의 성적 언동에 의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것으로 족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성적 수치심의 유무가 성희롱의 판단기준이 되거나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되고, 오히려 수치심은 행위자가 양성평등을 표방하는 현 시대와 사회공동체가 요구하는 건전한 상식으로 돌이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았을 때 느껴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음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판결』

-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의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판단기준(2012)』

- ① 당사자나 진술에 비추어 성희롱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별한 판단자료나 기준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곧바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②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③ 당시 상황에 대한 참고인의 구체적 진술이 있는 경우에도 성희롱 인정함
- ④ 또한 행위자의 언동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그 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행동(주위 사람에게 얘기한 사실, 일기장 등 기록, 퇴직, 정신과 치료 등)을 고려하고 ⑤ 행위자의 사후 태도나 ⑥ 행위를 하기 전의 평소 언행(진정 내용 외에도 다른 시점에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언동을 한 일이 있는지) 등도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고 있음

성희롱·성폭력 사건보도에서 언론의 태도

- 2017. 8.11. 성희롱 의혹에 목숨끊은 교사 누명 풀어달라(전북일보. 남승현 기자)
→ 유족이 공개한 학생 탄원서 일부 공개(사진)
- 2017. 8.12. 시골 교사의 자살....‘성추행 당했다’. 부풀린 진술이 부른 비극(조선일보. 김상윤 기자) → 학생·학부모 탄원 내용 공개
- 2017. 8.17. 불안 S중 교사 유족 ‘성추행이랴노? 학생들도 아니라는데....’ [김현정의 뉴스쇼+]
- 2020.12.14. 미투 무고의 결과는 억울한 죽음 뿐. ‘부안 ***교사 자살 사건’(범죄 X 파일. 인터넷 기사와 나무위키를 토대로 작성)
→ 고인의 사진, 자필 메모, 학교 실명 공개, 학생과 운영위원 및 학부모 탄원서 사진 공개
- 2021. 8.12. 침묵의 4년, 다시 말하기를 시작해야 한다 (교육공동체 벗)
- 2024. 2.28.尹,***교사 명예회복 성추행범 누명쓰고 극단 선택(한경닷컴.이미나기자)
→ 포장증 사진(교사 측), 하태경TV(전북교육청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 2024. 8. 5. ‘선생님이 허벅지 만져’ 여중생들 짜고 거짓말..... 교사 억울한 죽음(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영정사진, 유족의 주장 중심 기록 등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2014. 여성가족부,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01 잘못된 통념 벗어나기

- 언론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성폭력 범죄의 보호 법익에 충실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보도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의 원인이 일부 개인의 정신적 병리현상이나 절제할 수 없는 성 욕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성 인식과 양성불평등문화 등 사회문화적 구조에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가 낮은 사람에게 의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아는 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이 여성의 순결을 훼손한 일, 치유되거나 극복될 수 없는 피해라는 사회적 편견에 기초한 보도를 지양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의 잘못된 처신으로 발생하였거나 피해자가 범죄에 발미를 제공하였다고 인식될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하여야 한다.

02 피해자 보호 우선하기

- 언론은 경쟁적인 취재나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나 가족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 언론은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보도 내용 중 근무지, 경력, 가해자와의 관계, 주거 지역 등 주변정보들의 조합을 통해서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언론은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함에 있어,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언론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자나 가족의 사생활이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03 선정적, 자극적 지양하기

- 언론은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주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다루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의 범행 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를 범죄 피해자가 아닌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언론은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성향,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04 신중하게 보도하기

- 언론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마치 확정된 진실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언론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적절한지 판단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05 성폭력 예방 및 구조적인 문제해결에도 관심가지기

- 언론은 피해자 보호 제도나 관련 법률 정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소개 등 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내용도 적극적으로 보도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나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을 넘어 성폭력 범죄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확산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도 주목하여 보도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의 발생 초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의 회복이나 치유 과정, 제도의 개선 노력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도하여야 한다.

2022년 인하대에서 학생이 성폭력을 당한 후에 숨진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선정적인 기사제목과 내용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고,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는 이에 대한 반성을 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기사의 제목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피해자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되고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듯한 내용을 담아서 안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부여했다. 그리고 ‘구조적 문제’를 다루면서 교육부와 학교가 제시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의견과 민간단체에서 지적하는 문제의 원인을 함께 기록하고 통계를 덧붙임으로써 독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에 앞서 한겨레는 관련 기사의 제목을 수정했고 이를 자발적으로 밝혀서 호응을 얻었다.(대학 내 알몸 상태로 발견된 여대생 숨져... 경찰 수사 → 인하대 교내서 피흘린 채 발견된 학생 숨져.. 경찰 수사'로 수정 / 문제의식을 느낀 디지털 뉴스 편집자)

성폭력사건수첩에서는 취재시 (1)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2)피해자 및 가족 등 관련자를 인터뷰할때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기사 작성 및 보도시에는 역시 (1)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보도는 하지 않아야 한다. (3)성폭력 사건에 ‘피해자 측’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4)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여과없이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언론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에도 예방과 구조적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언론은 오히려 2차 피해를 양산하는 방향으로 보도행태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지역 언론의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

스쿨미투에 대응하는 교육청의 모습

우리 사회는 2018년 미투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경험한 성폭력(성희롱)을 고발하는 피해자들을 만났고, 그들 덕분에 우리 사회는 민간과 공공의 영역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미투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 인식으로 인해 성폭력(성희롱)이 용인되어 온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그것의 변화를 요청하는 사건이었다. 이후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성희롱·성폭력 전담 조직을 15개까지 확대했고, 설치 여부를 평가지표에 반영하겠다는 것과 2000년 초·중·고·대학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여부를 전수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학들도 학내에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만 하고, 학교는 성평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과 추진력도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서 교사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건만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반성폭력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사들의 왜곡된 인

식과 성차별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스쿨미투 사태에 교육당국이 적절하게 대처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스쿨미투 처리 현황을 묻는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2020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는 원고 일부승소(가해자 실명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정보 일체 공개)했다. 2심도 승소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학내 성추행·성폭력 사건의 방지 및 학생 보호의 이이고가 자율적이고 공정한 인사 업무 수행을 위해 시민들에게 정보공개해야 한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누38166)한 바 있다. 학교 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기관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결과를 알리는 것이 재발방지의 기본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2018년,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스쿨미투’를 언급하고 피해 학생들의 제보와 폭로가 이어져 사태의 심각성이 입증되었지만, 처벌은 아직도 미온적이고 가해 교사들은 교단으로 부메랑처럼 복귀하는 등 교육현장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용기 냈던 학생들은 주동자 색출위협과 소외와 조롱을 견디며 보호받지 못했다.(출처: 베이비뉴스 2023.3.9. 학교내 성폭력 스쿨미투 학교, 경기도 교육청은 왜 안 밝히나 / 전아름 기자)

2017년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 이후 우리 지역 학교와 교육청은 스쿨미투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바뀌지 않았는지 앞으로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할 의지는 있는지 전북교육청이 답해야 한다. 학생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공간인 학교에서는 교사들도 보호받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학교에서 성폭력(성희롱)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개별 학교와 학생들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에 교육청이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성폭력 발생시 지침과 매뉴얼에 따라 교육청이 보고를 받은 후에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청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가?

교사가 사망한 이후 유족 측이 제기한 순직인정,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 손해배상 등의 소송에서 순직이 인정되었고,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결정을 받았지만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다. 유족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판단에서 재판부는 학생들이 제출한 3차 진술서와 탄원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전북교육청이 조사개시 및 과정, 절차, 판단 및 직위해제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기각으로 판결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사건이 2차 피해를 양산하고, 피해자를 다시 ‘거짓말했던 학생들’로 소환하지 않도록 언론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언론에 의해 피해학생들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 교육청은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

오늘 집담회는 2017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으로 인한 2차 피해의 심각성, 지역사회와 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이 결국 피해자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에 문제를 짚어보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모인 자리이다.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먼저이다(원칙이다). 용기를 내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학교를 더 성평등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학교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왜, 다시 이야기를 하는가? 아직도 변화가 더디거나 거꾸로 가면서 피해 학생들의 존재를 지우거나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이 반인권적이고, 학교내에서 성차별을 고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변화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고, 공공 기관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